【별첨4】 신구조문대비표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생 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생 략) 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신 설) (신 설)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생 략)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좌 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제3조 (좌 동) 제4조(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집합투자증권(채권형) 3.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4.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5. 집합투자증권(주식형) 6. 정기예・적금 7.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8. 제2호 내지 제5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9.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좌 동) 제5조 (좌 동)